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9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,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개정(안 제1조, 안 제3조)
-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시행령의 삭제에 따른 조문 개정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근거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1조와 안 제3조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이 2021년 12월 28일 전부개정(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.
- 안 제2조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2022. 6. 29. 시행)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.
- 또한, 우리도 현실과 실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.